



Cambodia
캄보디아 사무소



8월부터 영유아 식품 마케팅 관리·감독 철저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영유아 식품 마케팅에 관한 시행령(2005년 발효)」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30일간 유예기간을 준 뒤 처벌하겠다고 보건부가 발표했다.

7월 30일 보건부는 이같이 발표하고 위반 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영업정지와 제품을 압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속 대상은 식품뿐 아니라 젖병, 젖꼭지도 해당하며, 단속 기관은 내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사기단속위원회'로 발표됐다.



보건부의 경고는 최근 논란이 된 싱가포르 누트리랏(NUTRILATT)사의 분유와 관련이 있다. 5월 초 국립어린이병원과 칸타보피아동병원에서 싱가포르 누트리랏사의 분유<사진>를 섭취한 어린이들이 철분결핍성 빈혈 증세를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논란이 야기되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초 피해 영유아 부모들이 광고와 달리 동사의 분유에 영양소가 부족하다며 보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품질 조사를 촉구했다. 한 언론은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한 부모의 증언을 인용하여 “누트리랏 분유를 먹은 세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혈을 받아야 했다”고 보도했다.

누트리랏 분유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유 제품 가운데 하나로 논란이 불거진 후 유통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졌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이며 7월 31일까지 보건부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에서 분유 유해성 논란은 매우 드문 편이며, 가장 최근의 일로는 2018년 듀멕스(Dumex)사의 'Dumex Mamil Gold Infant Milk Formula-Step 1'에서의 식중독균 오염 사례가 있다. 당시 캄보디아 수출입검사기관인 캄콘트롤(Camcontrol)은 동사의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및 유통업체에 해당 상품을 회수할 것을 명령하고 아울러 구매 중단을 요청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당국이 일부 해당 제품에서 식중독세균인 크로노박터 사카자키(Cronobacter Sakazaki)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후 나온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캄보디아 보건당국은 조제분유와 이유식 제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 보건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영유아 식품 마케팅에 관한 시행령 정리 >

제1조 : 목적 동 시행령의 목표는 모유 수유를 보호·권장하고, 적절한 그리고 시기적절한 보완적 영양공급을 장려함으로써 모유 대체 제품이 필요시 적절한 정보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안전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 범위

시행령에서 언급한 영유아 식품은 ▲ 영아용 조제분유 ▲ 영유아 식품 ▲ 젖병, 고무 및 플라스틱 젖꼭지 ▲ 생후 6개월 후 식품 ▲ 보건부가 관련 부처와 정한 부령에서 명시한 기타 제품 등이다.

제9조 : 영유아 식품 라벨 표기 시 주의사항

-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 생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 및 만 2세 이후까지 모유 수유 시 우수성 언급
- ※ 7월 30일 발표에서 보건부는 '6개월 동안 모유 수유만을 하고 2년 또는 이상 계속 모유 수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There is nothing better than exclusive breastfeeding for six months and continued breastfeeding until two years or more)'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청
-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제 및 사용법에 대한 안내
- 부적절한 사용 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Important Notice'라는 어구와 함께 표시
- 권장 연령 도달 전 제품 사용 시 건강상의 위험성과 이 경우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 포함
- 컵 수유(cup-feeding)가 병 수유(bottle feeding)보다 더 위생적임을 설명
- 제품이 모유 수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나 유사한 내용 사용 금지
- 제품 조제 방법 설명 외에 다른 그림, 사진, 그래픽 표현 사용 금지
- 생후 6개월간 수유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언급
- 모든 영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사 제품의 경우 제품이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문 부착<제10조>

제11조 : 젖병과 젖꼭지 라벨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모유 수유의 우수성 || 젖병 보다는 컵 수유가 더 안전하다는 안내 || 젖병 및 젖꼭지의 적절한 세척 및 멸균에 대한 지침 || 제대로 멸균하지 않았을 경우 젖병 사용시 위험성 경고 || 젖병 수유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고, 유아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 강조 ||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상호 및 주소 || 젖병과 젖꼭지를 사용시 모유 수유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경고

금지사항

- 1 보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판매점, 병원, 보건소 또는 기타 장소에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광고 || 특별 전시, 할인 쿠폰 제공, 선물 제공, 리베이트 제공, 특별 판매, 특가 판매, 제휴 판매, 끼워 팔기, 경품 또는 선물 제공 || 샘플 제공 || 보건 종사자에게 제품에 관한 정보 또는 교육 자료의 기증 또는 제공<제13조>
- 2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보건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보건 종사자와 병원, 보건소(또는 종사자)를 상대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샘플 기증 또는 배포 || 제품명, 제품 로고, 상표 등이 부착된 장비, 자료, 문서 또는 서비스 기증 또는 배포 || 홍보 목적의 필기구, 달력, 포스터, 노트, 성장 차트, 완구의 기증 또는 배포 || 모자보건 및 아동 건강 종사자 협회나 보건 종사자에게 선물 제공, 기부 또는 기타 혜택 제공 || 임산부와 수유 여성, 영유아 부모 또는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게임, 콘테스트, 캠페인 후원 || 연구, 회의, 워크숍, 지속 교육 또는 회의에 직간접적인 장학금 또는 기금 지원 || 급여 제공 || 직원에게 판매 할당, 직원 보수에 제품 포함하는 행위 <제14조>
- 3 보건부의 사전허가 없이 의료기관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선물, 기부, 기타 혜택, 기금, 귀중품 수령 || 어머니나 가족에게 유아용 분유 사용법 시연 || 샘플 수령 및 제공 || 평가 또는 조사<제15조>
- 4 보건부의 승인 없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 장비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제16조>

Key Point

캄보디아 시장에 유아식품을 수출하고 유통하고자 계획하는 수출업체가 있다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가 이어질 수 있으니 당분간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TV광고, 옥외광고 등을 진행하기 전에 캄보디아 보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추진 가능하므로 해당 마케팅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 시음회 및 증정품 제공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은 언제든 보건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캄보디아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23명을 기록해 한국의 1,000명당 출산율 7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자국의 조제분유가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캄보디아 어린이 대상 유명 캐릭터 부재로 한국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유아식품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캄보디아 유아식품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